

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

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

【제정 2018. 1. 15.】
【일부개정 2018. 1. 15.】
【일부개정 2018. 5. 17.】
【일부개정 2018. 7. 19.】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사천시 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의 직제에 관하여는 「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및 「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직제의 개편) 공단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신설·개편·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장 구성원

제4조(구성원) 공단에 이사장, 상임이사, 비상임이사, 감사 및 직원을 둔다.

제5조(이사장)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6조(이사) 공단에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, 이사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7조(감사)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, 사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회계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제8조(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
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사천시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직원) ① 직원은 일반직(행정직, 기술직)과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한다.

② 일반직 직원의 직급은 3급부터 7급까지 각각 구분한다. <개정 2018. 1. 15.>

제3장 조직

제10조(기구) ① 공단에 경영기획팀, 케이블카운영팀, 체육시설팀, 하수처리 시설팀을 두며 공단의 기구표는 「별표 1」 과 같다. <개정 2018. 1. 15.><개정 2018. 7. 19.>

② 조직 관리상 필요할 경우 고문과 직능별, 시설별 분야책임자인 팀장을 둘 수 있다.

제11조(정원) 공단의 팀별, 직종별 정원은 「별표 2」 와 같다. <개정 2018. 1. 15.>

제12조(직위·직급) ① 제11조의 관리부장은 일반직 3급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. 15.>

② 제11조의 각 팀장은 일반직 4급~5급으로 보한다. 팀장의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은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.

③ 일반직 4급은 팀장, 5급은 과장, 6급은 대리라 하고, 7급 이하직원은 주임이라 한다.

④ 5급부터 7급까지의 직원에게 직급별로 직상급자의 직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.

제4장 사무분장

제13조(분장사무) ① 경영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<개정 2018. 5. 17.><개정 2018. 7. 19.>

1. 경영목표, 경영혁신, 경영성과관리 및 심사분석, 경영평가 등 경영관련업무 총괄
2. 조직 기구 및 정원관리 전반
3. 정관, 제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, 공포에 관한 사항

4. 사천시 및 사천시의회 관련 업무 총괄
5. 복무, 인사, 교육, 보수, 포상, 징계 및 후생관리
6. 대외 홍보·보도, 간행물 제작 관련 사항
7.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(자체감사, 상부기관 감사)
8. 문서와 공인의 관리 및 통제
9. 노무,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
10.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운영
11. 이사장 지시사항 처리총괄
12. 예산의 편성·집행·결산
13. 회계, 지출, 결산, 회계감사 및 자금운용관리
14. 공사·용역·물품 계약, 입찰 및 집행관련 업무
15. 그 밖의 재무, 회계, 세무에 관한 사항
16. 자산 및 물품관리, 차량관리, 재물조사, 세외수입, 수입금관리 총괄
17. 보안업무, 당직, 비상계획 및 정보화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18. 전산관련 기획, 프로그램 개발,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련업무
19.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총괄
20.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운영
21. 그 밖의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22. 그 밖의 이사장이 공단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시한 사항

② 케이블카 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삭도시설의 유지관리 보수업무
2. 청사 및 구조물, 기계, 전기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
3. 시설물 안내 및 이용홍보
4. 복무감독 및 교육훈련
5. 노사조정 및 케이블카운영관련 민원업무
6. 삭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7. 관련업무의 종합기획·조정
8. 삭도시설의 운영계획수립
9. 운영관리에 따른 조정·통제
10. 기타 시설물의 통상적인 유지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의 이사장이 공단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시한 사항

③ 체육시설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사천실내수영장 관리·운영

2. 국민체육센터 관리·운영
 3. 기타 시설물의 통상적인 유지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의 이사장이 공단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시한 사항
- ④ 하수처리시설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1.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·운영
 2. 사천·삼천포 가축분뇨처리장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·운영
 3.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·운영
 4. 중계펌프장 시설 관리·운영
 5. 수질운영 및 분석 관리
 6. 기타 시설물의 통상적인 유지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 7. 그 밖의 이사장이 공단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시한 사항

제14조(사무분장의 조정) ① 팀 단위 소속직원별 사무분장은 해당팀장이 정하고, 사무분장 결과를 경영기획팀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19.>

② 각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다.

③ 각 팀은 상호 관련 있는 사무에 관하여 유기적으로 협의·협조하여야 한다.

제15조(직무수행과 책임)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.

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16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사업장 및 시설물 인수시기는 설립 시기 및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시설별로 2018년 케이블카운영팀, 2019년 체육시설팀, 2020년 하수처리시설팀을 인수한다.

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8. 1. 15.)

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5. 17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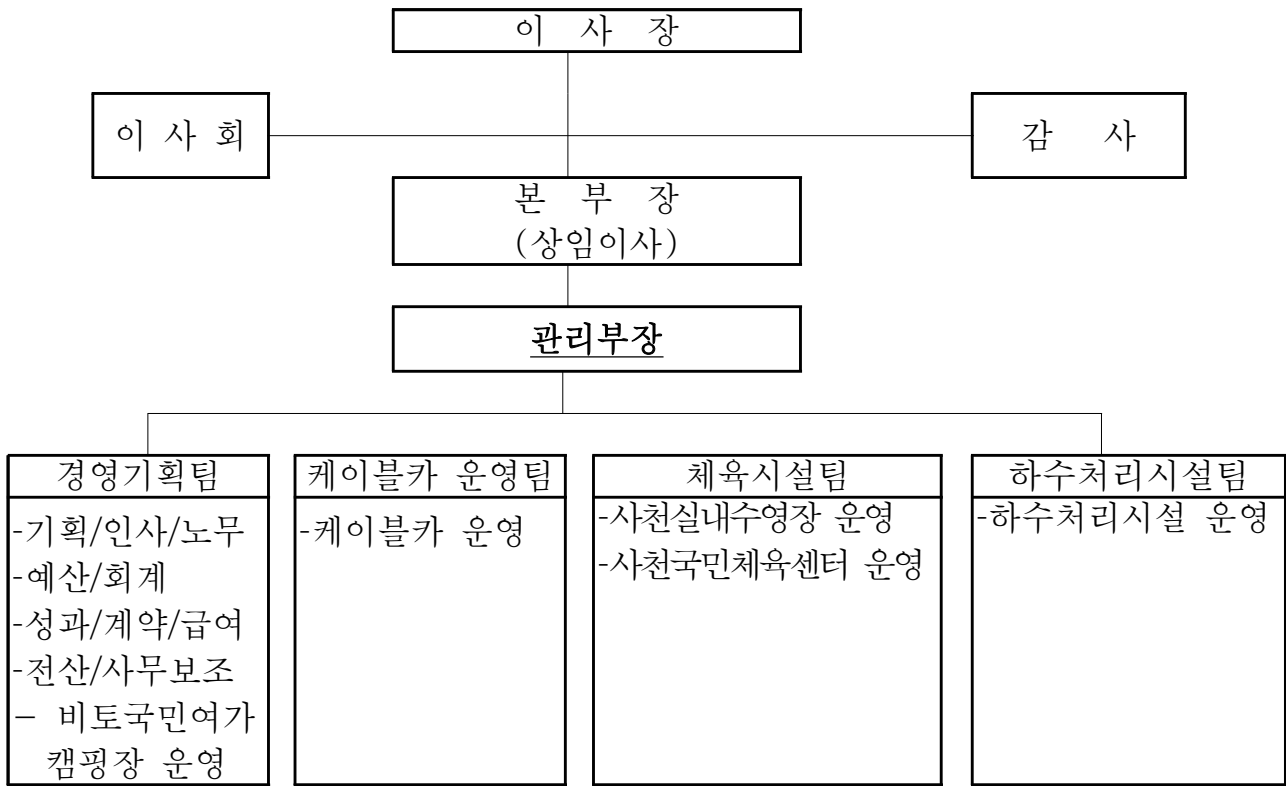
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7. 19.)

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8. 1. 15.><개정 2018. 5. 17.><개정 2018. 7. 19.>

기 구 표



[별표 2] <개정 2018. 1. 15.><개정 2018. 7. 19.>

정 원 표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임원	일반직						무 기 계약직
			계	3급	4급	5급	6급	7급	
계	102	2	54	<u>1</u>	4	8	17	24	46
경영기획팀	9	2	6	<u>1</u>	1	1	1	2	1
케이블카 운영팀	27		15		1	3	8	3	12
체육시설팀	16		6		1	1	1	3	10
하수처리 시설팀	50		27		1	3	7	13	23